

7. 폐기신고

01 | 적용대상과 법적근거

신고 대상	「생화학무기법」제10조에 따라 제조시설 폐쇄명령(법 제8조의2)을 받거나 제조 폐지신고(법 제9조)를 한 경우, 폐기의무자가 폐기하여야 할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의 신고 의무를 부과 - 신고서 제출처 : 산업통상부 - 신고서 수리기관: 산업통상부장관
신고기한	(사전신고 의무) 폐기 전에 미리 신고
유의사항	- 폐기의무 기한 -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폐기(법 제10조제1항) ☞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법 제10조제3항) ☞ 폐기방법은 산업통상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명하는 방법을 따라야 함 (법 제10조제5항) (폐기 대체 수단) 양도 -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법 제10조제2항)

02 | 신고 의무 사항

누가?	(폐기의무자) 신고제조자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 법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
언제까지?	사전신고 의무: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
어디에?	산업통상부장관
어떻게?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접수)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접수)

7. 폐기신고

03 | 신고 절차

단계	검토 사항	비 고
대상 여부 확인	• 법령상 폐기 신고의 폐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법 제10조제1항
기한 산정	• 폐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	• 법 제10조제3항
서류 준비	•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 • 첨부서류(각1부) 1.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또는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
	• 양도신고: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사에게 양도	• 법 제10조제2항
제출(접수) 방법	• 온라인 -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 기관 계정 필요 • '양도신고'도 통합관리시스템 으로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 담당 부서로 우편·방문 접수	• 산업통상부
수리 후 의무	• 폐기: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을 폐기 ☞ 산업통상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명하는 폐기방법을 따름	• 법 제10조제1항제1호 • 법 제10조제5항
	• 장부의 비치: 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장부를 법정 기한 보존	• 법 제21조, 시행령 제12조

※ 법: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04 | 신고 방법(서식 작성 요령)

4.1 (온라인)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1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https://batims.or.kr/login>

2 “폐기신고 신청하기” 클릭

7. 폐기신고

3 신고서 작성

① 담당자 정보 – 자동 생성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biocompany년 | 공지사항 | 내 정보 관리 | 로그아웃

최근신고 수입허가관리 보유신고관리 제조신고관리 폐기(양도)신고관리 정기(수시)검사 자가점검

폐기신고

신고서 작성 신고서 업로드 접수대기 검토중 신고 완료

• 담당자 정보

아이디	biocompany		
성명	김철수		
직위	과장		
휴대전화	010-1234-5678	전화	031-123-4567
이메일	000@0000.co.kr	팩스	
소속기관	바이오기업	소속부서	관리팀
조직구분	기업	담당자구분	관리책임자

② 신고인 정보 – 자동 생성

•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	--	------	-----

• 신고인 정보

상호(명칭)	바이오기업
성명(대표자)	홍길동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소	(13488)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1층 바이오기업
전화번호	031-123-4567

③ 폐기물질 제조신고번호 기입 및 폐기물질 명칭 - 해당 물질명을 선택

· 신고내용	
폐기물질 제조신고번호	제조신고-20XX-000 폐기하려는 물질의 제조신고 확인증에 입력된 번호
폐기물질 명칭	물질명을 선택해 주세요.
특성	인체·인수 병원균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_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폐기 수량	_생물작용제 및 독소 목록물질 아님 (Not in the list)
폐기 일시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 (South American h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폐기 장소	니파 바이러스 (Nipah virus)
폐기 사유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폐기방법	두창 바이러스 (Variola virus)
첨부서류	라사열 바이러스 (Lassa fever virus)
신고일	리프트게곡열 바이러스 (Rift Valley fever virus)
신고인	마버그 바이러스 (Marburg virus)
폐기방법	폐기방법
첨부서류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신고일	2025.12.01
신고인	홍길동

④ 특성 - 다음 중 선택 입력 “인체·인수 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폐기 수량, 폐기 일시, 폐기 장소, 폐기 사유, 폐기 방법 등 - 해당 정보 기입

· 신고내용	
폐기물질 제조신고번호	제조신고 20XX-000 폐기하려는 물질의 제조신고 확인증에 입력된 번호
폐기물질 명칭	보툴리눔균 (Clostridium botulinum) × ▾
특성	인체·인수 병원균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 신고인만 적용됩니다.
폐기 수량	100ℓ, 50 plate 직접입력 ⓘ ⓘ
폐기 일시	2026.01.19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3개월내로 지정해주세요
폐기 장소	바이오기업 실험실(000호)
폐기 사유	향후 연구 및 제조 계획이 없어 제조 폐지신고 후 전량폐기
폐기방법	고압증기멸균(121℃, 15분)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
첨부서류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폐기계획서.pdf ⓘ
신고일	2025.12.03
신고인	홍길동

7. 폐기신고

⑤ 첨부서류 - 첨부파일 업로드

신고내용	
폐기물질 제조신고번호	제조신고 20XX-000 폐기하려는 물질의 제조신고 확인증에 입력된 번호
폐기물질 명칭	보툴리눔균 (Clostridium botulinum) X
특성	인체 · 인수 병원균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 신고인만 적용됩니다.
폐기 수량	100g, 50 plate 직접입력
폐기 일시	2026.01.19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3개월내로 지정해주세요
폐기 장소	바이오기업 실험실(000호)
폐기 사유	향후 연구 및 제조 계획이 없어 제조 폐지신고 후 전량폐기
폐기방법	고압증기멸균(121°C, 15분)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
첨부서류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폐기계획서.pdf
신고일	2025.12.03
신고인	홍길동

※ 첨부서류의 상세내용은 “4.3 첨부서류”에서 확인하고 작성

⑥ (필요시) 추가 입력 사항

추가 입력 사항	
메모	
기타 첨부자료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⑦ 신고서 생성 클릭

신고서 생성 취소
--

4 신고서 업로드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biocompany님 | 공지사항 | 내 정보 관리 | 로그아웃

[최근신고](#)
[수입허가관리](#)
[보유신고관리](#)
[제조신고관리](#)
[폐기\(양도\)신고관리](#)
[정기\(수시\)검사](#)
[자가점검](#)

폐기신고 - 바이오기업 바이오기업

[신고서 작성](#)
[신고서 업로드](#)
[접수대기](#)
[검토중](#)
[신고 완료](#)

• 직인 날인한 폐기신고서 업로드

Step 01
폐기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①

↓ 폐기 신고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후 직인 날인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폐기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직인 날인 후
이미지 파일 또는 pdf파일로
업로드 해 주세요.

Step 02
직인 날인 폐기신고서 업로드

②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바이오기업-폐기신고서.pdf

③

접수요청

- ① 신고서 생성 후 파일을 다운로드 후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스캔
- ②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
- ③ 접수요청 클릭

※ 수정이 필요한 한 경우에는 “신고서 업로드”의 하단에 수정 클릭

7. 폐기신고

4.2 (오프라인) 산업통상부 방문접수

-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에 방문접수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1종 화학물질 [V]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상호(명칭) 바이오기업		
	성명(대표자) 홍길동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1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삼평동) 1층 바이오기업	전화번호 000 - 000 - 0000	
폐기물질 명칭 보툴리눔균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폐기 수량	100 l, 50 plate (제조신고 수량 기재)		
폐기 일시	0000년 00월 00일 (신고 처리기간이 30일로, 30일~3개월 내로 지정)		
폐기 장소	바이오기업 실험실(000호)		
폐기 사유	향후 연구 및 제조 계획이 없어 제조 폐지신고 후 전량폐기		
폐기방법	고압증기멸균(121℃, 15분)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폐기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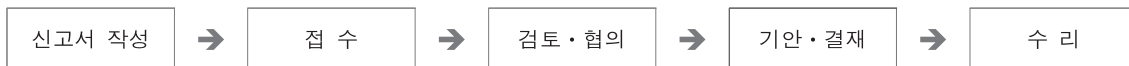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는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인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4.3 첨부서류

※ ‘폐기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구성

- 제출인 정보(신고서 본문과 일치)
 - ▶ 제출인 정보(상호·대표자·연락처)
 - [별지 제14호서식] 기재사항과 동일
 - ▶ 폐기대상 물질 정보
 - 명칭, 분류(생물작용제/독소), 보유형태(용액·동결건조 등), 총량·단위(신고서와 일치)
 - ▶ 폐기사유·기한
 - 법 제10조 각 사유 중 해당 사유와 사유 발생일, D+90일 이내 폐기계획 명시
- 보관·취급 보안(폐기 전까지)
 - ▶ 임시보관 위치(보안관리구역), 이중잠금 등 출입통제, 관리책임자 지정
 - ▶ 라벨링·재포장 및 취급기록 유지 (반출·반입·재고 변동)
 - ▶ 관련 장부·자료 5년 보존 계획
- 운반(해당 시) 보안·안전계획
 - ▶ 운반용기(밀폐·파손방지) 사용, 경로·시간 관리, 위치 확인·감시, 비상연락망 및 사고시 신고·조치 절차
- 폐기수행 개요
 - ▶ 폐기수행 장소·주체: 자체 처리 또는 위탁처리 기관(사업자명·시설 소재지) 표기
 - ▶ 폐기 방식 개요: 예) 전량 위탁 소각, 시설 내 유효한 불활화 (불활화 방법 문헌 첨부) 후 처분 등
 - ▶ 폐기물 처리 절차: 예)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 ▶ (유의문구 포함) 최종 폐기방법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장관 명령에 따름
- 교육·비상대응
 - ▶ 관련 종사자 보안관리 교육 이수 현황, 사고대응 매뉴얼 요약(도난·유출 등 즉시 신고)

7. 폐기신고

4.4 제출전 (자가) 점검표

● 기본 정보·적용 대상 확인

☐	• 이번 건이 ‘폐기신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	•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을 확인했다. ※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 법 제8조의2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폐지의 신고일
☐	•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 후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할 일정을 잡았다.
☐	• 생물작용제등의 폐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다.

● 서식 작성 사항(필수 기재)

☐	• 서식 상단에서 “생물작용제등” 항목을 선택(체크)했다.
☐	• 신고인 기본정보(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다.
☐	• 폐기대상 정보(물질명칭, 폐지 수량, 폐기 일시, 폐기 장소, 폐기 사유, 폐기방법)를 명확히 기재했다.
☐	• ‘폐기 수량’에 단위를 빈칸에 명확히 적었는가? (예: mg, mL, vial 등)
☐	• 서명/직인, 제출일자, 연도 누락이 없는가?

● 첨부서류 준비

☐	•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했다.
--------------------------	--------------------------

4.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유 중인 생물작용제 중 일부 type에 대해서만 전량폐기 하려고 합니다. 폐기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제조 폐지신고를 하고 전량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폐기하는 경우 폐기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관리장부에 폐기 기록을 해두고 보유현황 보고때 변동 수량을 보고하면 됩니다.

Q2	연구과제 종료 후 남은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폐기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예. 귀 기관이 해당 물질을 제조신고(법 5조의2)하고 연구를 종료(=제조를 폐지)하는 경우, ‘제조 폐지신고’ 후 보유 중인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 폐기(또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양도)해야 하며, 그 종류·수량을 ‘폐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프로젝트 수행 중 제조하지 않고 보유·사용만 했다면, 법 10조의 ‘폐기신고’ 대상(·신고제조자에게 부여된 폐기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유자(제조 아님)에게 법 10조의 ‘폐기신고’ 의무는 직접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신고 및 보유현황 통지 의무(시행령 9조의2)를 지켜야 합니다.
Q3	폐기의무자가 폐기신고 없이 자체 폐기 하면 되나요?
A	폐기 전 종류·수량 신고가 의무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의 폐기방법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Q4	3개월 내 폐기가 어려운 경우 연장 이 가능한가요?
A	법에 기한 연장 규정은 없습니다.
Q5	폐기의무자가 현재 보유한 독소가 소량(시행령 [별표 4] 신고가 면제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인데도 폐기신고가 필요한가요?
A	예. 보유신고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폐기사유가 있으면 폐기신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6	폐기물질을 해외로 반출해 폐기 또는 양도 할 수 있나요?
A	반출은 수출에 해당하며 별도 수출허가 체계에 따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십시오.
Q7	폐기 방법 은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A	아니오.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신고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민 건강·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명령합니다. 그 지시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Q8	‘제조폐지 신고’ 이후에도 법 제21조의 장부를 보존 해야 하나요?
A	네. ‘제조폐지 신고’ 이후 생물작용제등을 폐기·양도가 종료되어도, 법 제21조,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관련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 ‘제조 폐지신고’ 전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 → ‘제조 폐지신고’ 후 처분사항(폐기 또는 양도) 포함

7. 폐기신고

05 | 유의사항(법 위반 시 제재)

「생화학무기법」 제10조 ‘폐기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될 처벌 규정

5.1. 위반 사례

● 사전 폐기 신고 위반(법 제10조)

미신고	
사례	나중에 신고하려다 폐기 미신고
근거	법 제10조제3항은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 거짓 신고(법 제28조)

거짓 신고	
사례	수량 축소·성상(독소/배양액 등) 허위 기재
근거	법 제28조제3호의 거짓신고에 해당

● 명령위반(법 제28조)

명령위반 폐기	
사례	장관이 지정한 폐기방법이 아닌 비인가 처리시설 반출, 지침·명령에 없는 폐기처리 공정 사용 등
근거	법 제28조제3호의 명령위반에 해당

● 생물작용제등 처분 위반(법 제10조)

보유물질 폐기 기한 준수 미이행	
사례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 후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하지 않음
근거	법 제10조제1항은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도록 함

● 장부의 비치 위반(법 제21조)

장부의 비치 등 위반	
사례	‘제조 폐지신고’ 후 생물작용제등의 관련 장부를 폐기
근거	법 제21조에 따라 5년간 관련 장부를 기록·유지 → ‘제조 폐지신고’ 전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 → ‘제조 폐지신고’ 후 처분사항(폐기 또는 양도) 포함

5.2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

폐기 미신고 경우	
행위	폐기 전에 신고 미이행
조항	법 제10조제3항
벌칙	• 법 제28조제3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신고 경우	
행위	수량 축소·성상(독소/배양액 등) 허위 기재
조항	법 제28조제3호
벌칙	• 법 제28조제3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생물작용제등의 폐기 관련 위반 경우	
행위	명령된 폐기방법 불이행
조항	법 제10조제5항
벌칙	• 법 제28조제3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 미이행 경우	
행위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 후 3개월 내 폐기 미이행
조항	법 제10조제1항
벌칙	• 법 제27조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7. 폐기신고

장부의 비치 의무 위반 경우	
행위	폐기 후 법 제21조에 따른 장부 비치를 불이행
조항	법 제21조제1항, 제2항
벌칙	• 법 제28조제7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양별규정(법인 등)에 대한 책임	
조항	법 제29조
벌칙	사업(기관) 명의로 위반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임직원)와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벌금형 등 처벌될 수 있음. ※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는 예외

06 |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 (자가) 점검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함.

☞ 신고제조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

- ① 그 후 남아있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해 ‘폐기신고’를 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 명령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전량폐기하거나,
- ② 동일 생물작용제등을 제조신고한 다른 기업, 기관 등에 양도할 예정이라면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

☐	• 생물작용제등의 폐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	•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①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신고 후 폐기하거나, ②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하였다.
☐	• (기록 보존) 관련 장부 및 자료를 5년간 보존한다. ☞ ‘제조 폐지신고’ 후 처분사항(폐기 또는 양도) 포함

07 「생화학무기법」 법령

「생화학무기법」

[법률 제21065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8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폐기신고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제1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6.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7.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② 신고제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제조 폐지신고)

- ① 허가제조사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폐기)

- ① 허가제조사나 신고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폐기 대상은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로 한정한다.
 1. 제8조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거나 제8조의2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허가제조사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질병관리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 ① 허가제조사, 신고제조사와 제13조·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7. 폐기신고

4. 제11조제2항이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1) 법령을 위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500
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250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 가공량 · 소비량 및 보유량
 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 · 인수량 및 인도자 · 인수자명
 5.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 국가별 수출입량
 6.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7. 폐기신고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
2.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

제12조의2(자료 제출)

-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제6조(폐기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에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취급하려는 자(이하 '임차기관'이라 한다)가 그 취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임대기관'이라 한다)와 취급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취급 업무(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와 관련하여 '임차기관'과 '임대기관'의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관리실무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임차기관'의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관리실무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임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